

부천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7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제안이유

- 폐기물관련 불법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이 낮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액을 인상하여 시민에 의한 불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4. 11. 30, 대통령령 제18593호)되어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건수는 월 30건에서 10

건으로 축소하고, 동일 장소 같은 날 10건 이하를 최초 신고자 1인으로 정함.(안 제11조제4항)

- 폐기물관련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조정
 -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조정
 -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신설
-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와 같이 과태료부과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폐기물관련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
 -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
 -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버릴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 폐기물 관리법에 100만원 이하로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많지 않다고 봅니다.
○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이 타시는 5만원인데 부천시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걱정하다고 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4호
의결 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출년월일 : 2005. 7. 1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폐기물관련 불법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이 낮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액을 인상하여 시민에 의한 불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04. 11. 30, 대통령령 제18593호)되어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건수는 월 30건에서 10건으로 축소하고, 동일 장소 같은 날 10건 이하를 최초 신고자 1인으로 정함.(안 제11조제4항)
- 나. 폐기물관련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

을 버리는 행위 :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조정

○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조정

○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신설

다.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같이 과태료부과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라. 폐기물관련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

○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

○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만원을 10만원으로 조정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월 3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 장소 같은 날의 경우 10건 이하로 지급한다.”를 “월 10건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처음 신고자 1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1조·제4조 및 제5조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0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중 제1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30이하	20이상 30이하	20이상 30이하
---	--------------	--------------	--------------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100이하	20이상 100이하	20이상 100이하
바.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0이상 50이하	30이상 50이하	30이상 50이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재활용)(제5조관련)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절 약과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u>50</u>	<u>100</u>	<u>200</u>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 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u>30</u>	<u>50</u>	<u>100</u>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u>10</u>	<u>30</u>	<u>50</u>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u>5</u>	<u>10</u>	<u>30</u>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 평방미터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u>50</u>	<u>100</u>	<u>200</u>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u>30</u>	<u>50</u>	<u>100</u>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u>10</u>	<u>30</u>	<u>50</u>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 <u>유통산업발전법</u> 」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u>100</u>	<u>200</u>	30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u>대규모점포</u> 중 백화점· <u>전문점</u> · <u>할인점</u>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u>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활용 제품 교환·판매매장을</u>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u>100</u>	<u>200</u>	30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u>30</u>	<u>50</u>	<u>100</u>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u>10</u>	<u>30</u>	<u>50</u>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u>5</u>	<u>10</u>	<u>30</u>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u>50</u>	<u>100</u>	<u>200</u>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u>30</u>	<u>50</u>	<u>100</u>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u>10</u>	<u>30</u>	<u>50</u>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u>5</u>	<u>10</u>	<u>30</u>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u>50</u>	<u>100</u>	<u>200</u>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30</u>	<u>50</u>	<u>100</u>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10</u>	<u>30</u>	<u>50</u>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5</u>	<u>10</u>	<u>30</u>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u>50</u>	<u>100</u>	<u>200</u>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법 제14조)	200	30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300	300	300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8.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별지”

[별표 3]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관련)

신 고 대 상 자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비 고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1천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u>20만원 이상</u> <u>30만원 이하</u>	<u>10만원</u>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3만원	
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만원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u>20만원 이상</u> <u>100만원 이하</u>	<u>20만원</u>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 폐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0만원	
7.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u>30만원 이상</u> <u>50만원 이하</u>	<u>10만원</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u></p> <p>제11조(포상금 지급 등) ① ~ ③ (생략)</p> <p>④동일인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u>월 30건까지</u>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장소 같은 날의 경우 10건이하로 지급한다.</p>	<p><u>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u></p> <p>제11조(포상금 지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월 10건까지</u> 지급할 수 있으며, 처음 신고자 1인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폐기물)(제5조관련)					[별표 1] 과태료부과기준(폐기물)(제5조관련)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관리법	14.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가.(생략)				----- 14. ----- ----- ----- ----- ----- ----- ----- ----- ----- ----- -----					
	나. 간이보관기 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10이상 20이하	나. 간이보관기 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30이하	20이상 30이하	20이상 30이하		
	다.(생략).				다.(현행과 같음)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20이상 50이하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100이하	20이상 100이하	20이상 100이하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신설>				바.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이상 30이하	20이상 30이하	20이상 30이하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재활용)(제5조관련)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재활용)(제5조관련)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 ----- ----- ----- ----- -----	-	-	-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2. ----- ----- ----- -----	-	-	-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3. ----- ----- ----- ----- ----- -----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 ----- ----- ----- ----- ----- -----				

현행					개정안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1) ----- ----- ----- ----- -----	50	100	200	
	(2)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2) ----- ----- ----- ----- -----	30	50	100	
	(3)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3) ----- ----- ----- ----- -----	10	30	50	
	(4)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4) ----- ----- ----- ----- -----	5	10	30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나. ----- ----- ----- ----- -----				

현행					개정안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야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야 ----- ----- ----- ----- -----	50	100	20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4조)	200	300	300	4 ----- ----- -----	-	-	-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5 ----- ----- ----- ----- -----	-	-	-	
	6 반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반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6 ----- ----- ----- ----- -----	-	-	-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5조제2항)	50	70	100	7 ----- ----- ----- ----- -----	-	-	-	
	8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	50	70	100	8 ----- ----- ----- -----	-	-	-	

현행				개정안			
[별표 3]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관련)				[별표 3]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관련)			
부과대상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비고	부과대상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비고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0,000원	1,000원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5만원	1천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20,000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10만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0,000원	3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3만원	
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20,000원		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	2만원	
5.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50,000원		5. 차량,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20만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 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이하	200,000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 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이하	20만원	
7.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00원	20,000원		7. 대형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10만원	

관계법령발췌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1호]

제8조(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에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한다.)에 의한 도소매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 및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
7.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